

##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제안 설명

### ☐ 의안번호 제2649호

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### 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자치구에 부과·징수 권한을 위임한 시세 중  
시장이 세무조사 한 시세에 대하여 직접  
부과·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
과세업무의 일원화로 소송 사무, 체납징수 등을  
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 
개정하는 것입니다.

- 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 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9. 8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